신·구조문대비표

□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규정

현 행 규 정	개 정 (안)	비 고
제9조 (원격수업개발) ⑤~⑥없음	제9조 (원격수업개발) ①~④ (변동 없음) **⑤ 원격수업의 개발은 영상의 질 관리 및 전체 원격 수업의 관리를 위하여 본교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기로 하다.** (신설) **⑥ 불가피하게 과목의 특성상 본교 스튜디오 외의 장소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, 사유서와 함께 1개의 샘플 영상을 제출 후 교육혁신센터장이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정하기로 하다.** (신설)	항 신설